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1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윤준병 · 이해식
박용갑 · 전종덕 · 노종면
윤후덕 · 한정애 · 소병훈
진성준 · 윤종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, 마약류취급자의 허가·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.

그러나 허가·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,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.

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 및

제64조제17호의2 신설)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)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·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3조·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(제3조·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·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우에 한한다)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마약류취급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,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의2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·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1조의2(마약류취급자 등에 대</u> <u>한 마약류검사의 실시) ① 사법</u> <u>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</u> <u>급 ·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</u> <u>하여 제3조 · 제4조 및 제5조제1</u> <u>항을 위반(제3조 · 제4조 또는</u> <u>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</u> <u>를 흡연 · 섭취하거나 자신에게</u> <u>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한 경</u> <u>우에 한한다)하였다고 인정할</u> <u>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</u> <u>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</u> <u>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마약류</u> <u>취급자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</u> <u>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</u> <u>여부를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</u> <u>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마</u> <u>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찰관리</u> <u>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 결</u> <u>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</u> <u>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</u>

제6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17. (생략) <u><신설></u> 18. ~ 20. (생략)	<u>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,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64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 1. ~ 17. (현행과 같음) <u>17의2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·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</u> 18. ~ 20. (현행과 같음)
---	--